

1. 코로나 19 의원급 운영방안

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 운영방안

(22.1.25(화), 시행관리팀)

1. 기본 방향

- (목적)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
 - 지역사회 병·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,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
- (운영) 호흡기 환자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여부 검사, 검사 후 재택치료(경증) 등 환자에 대한 의료적 통합관리
- (관리) 의료기관 내 코로나 의심환자(발열, 호흡기증상)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,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
 - ※ (붙임1) 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 진단-검사-치료 흐름도

2. 운영·관리 절차

- (요건) 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, PCR 검사, 재택치료기관을 모두 수행
 - *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
- (신청) RAT 검사(급여)를 위해 코로나19 병·의원은 심평원으로 신청,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으로 지정
 - 심평원은 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 정보를 보건소 등에 안내
- (역할)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(test), 내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, 환자 진료(처방 등), 재택치료, 중증 환자 전원*
 - *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보고

3. 환자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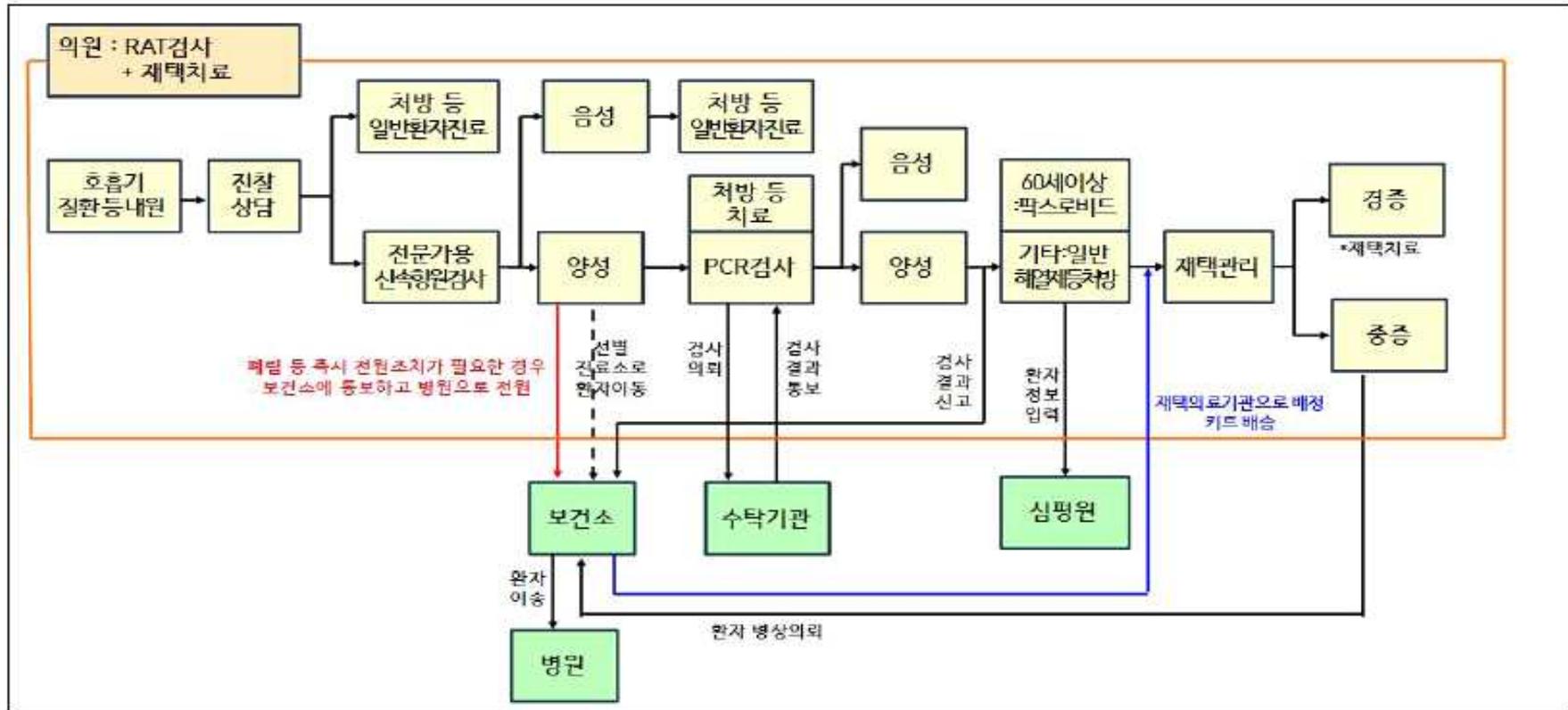
- (환자 내원) 의사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하고,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
- (RAT 검사 등)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조치
 - (음성인 경우) 환자 증세 등에 따라 치료, 처방 등 실시
 - (양성인 경우) PCR 검사 실시* 및 PCR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치료, 처방** 등 실시
 - *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, 선별진료소로 안내
 - ** 가급적 보호자가 약국 방문, 환자는 도보·자차 이용 등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안내

<양성 환자에 대한 이후 절차>

- (PCR 검사 결과) 수탁기관이 해당 병·의원에 통보*, 해당 병·의원은 보건소에 신고하고, 보건소는 결과를 코로나19 환자등록시스템에 입력
 - * 수탁기관-의료기관 연계시스템에서 의료기관별 ID를 부여받아 결과 확인 가능
 - 병·의원은 통보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구축한 시스템*에 환자 정보, 진료 내용 등을 입력하고,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 진료 수행
 - * 기존 심평원 시스템(예: DUR)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
- (재택 관리) 재택치료기관으로서 환자 관리
 - * (보건소) 재택의료기관 배정,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키트 배송 등 행정업무
- (중증환자 발생시) 주·야간에 중증(의심)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병상배정 필요성 보고
 - 보건소,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병상배정, 환자 이송 등 실시

붙임1

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 진단-검사-치료 흐름도



- ① **(의료기관 방문)** 코로나 의심환자(발열, 호흡기 증상)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, 대중교통 이용·밀접접촉·대화 등 자제 (가급적 자차 권장)

※ 사전 진료예약, 코로나19-일반환자 간 진료시간대 분리 등을 권장

- ② **(접수)**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·방문자 주의사항(배너, 포스터 등)을 설치하고, 체온 측정·호흡기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

• 접수·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

- ③ **(대기)**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·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, 환기^{***}(자연 환기 또는 음압)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

-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,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(검체채취 등)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

•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하여 관리

** 질병관리청 「슬기로운 환기 지침(가이드라인)」(21.10.27.) 참조

- ④ **(진료)**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, 의료인·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

▶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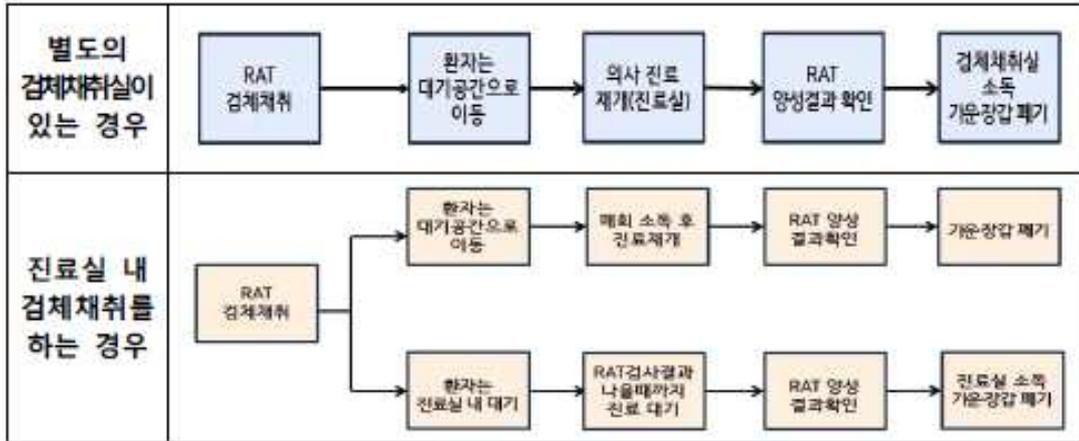
-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
-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(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) 즉시 교체한다.
-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.

- ⑤ **(검체채취·검사)** 검체 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·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 채취 가능

-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* 착용하고, RAT 양성인 경우 및 환자의 호흡기 비밀이 된 경우 폐기

- * 마스크(KF94 이상), 안면보호구(고글, 페이스실드 등), 일회용 긴팔가운 (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), 일회용 장갑(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)

<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·진료 절차(양성인 경우) >



- ⑥ (결과 후 조치)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적인 진료·처방 절차 진행 하나, 양성인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안내·소독 등 대응

< RAT 양성인 경우 >

- ①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 안내 (RAT 양성결과 통보지 발급)
 -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 RAT 검사 직후 PCR 검사 수행 가능
 - ※ RAT 양성만으로는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음
- ②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밀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 및 일정 시간 환기 실시
 -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, 대기실 의자, 진료실 의자(또는 침상),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
 - ※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,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
- ③ 처방전 등 발급 가능*
 - *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,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 권고

⑦ (수납) RAT 양성자의 경우, 일반적 방역지침(밀접접촉, 대화 등 자제)에 따라 수납

*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,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수납

⑧ (귀가) RAT 양성자의 경우,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, 대중교통 이용 자제,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,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귀가

⑨ (PCR양성자 확인 시)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△자체 환경관리 유지, △의료진 및 내원객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강조, △의료진 의심증상 시 업무 배제 및 진단검사 실시

< 보건소 접촉자 조사/관리 기준 >

❶ 시설(의료기관)조사 여부

-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하지 않음.
다만, 대응역량이 가능한 지자체는 조사 가능

❷ 접촉자 분류기준

- 적절한 보호구 착용 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
- 의료진, 대기자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한 경우 접촉자 대상 아니지만,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력 기반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

❸ 밀접접촉자 격리관리 기준

구분	예방접종 접종완료자 (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)	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
밀접접촉자	수동감시 (6~7일 차 PCR 검사)	7일 격리 (6~7일 차 PCR 검사)

※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: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

■ 정리

- 1). RAT 검사
- 2). RAT 검사 + 주간 재택
- 3). RAT 검사 + 주간 재택 + 야간 on call
- 4). 재택치료 - 서울형 : 24시간 당직 시스템

1. 1형 RAT검사만 시행하는 기관 의사 1인당 1일 10회까지는 약 67,000원
11회 부터는 55,000원

2. RAT 재택치료(09~19시) 모델 30,000원

3. RAT 재택치료(24시간 관리, 단 19시 이후~오전 9시, 일요일, 공휴일은 온콜 허락)
62,000원

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

(’22.1.27(목), 시행관리팀)

1. 신청 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’22.1.27(목)~, 심평원에 수시로 신청
 - 신속하게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집중신청기간*을 운영
 - * (1차) ’22.1.27(목) ~ 2.1(화), (2차) ’22.2.2(수) ~ 2.7(화)
 - 대한의사협회가 신청기관 취합·정리*하여 심평원에 송부(2.1.) → 심평원에서 대상 기관 정리, 홈페이지 게재, 중수분·지자체에 통보(2.2.)
 - * (붙임) 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 신청서, (별첨) 신청 엑셀 양식
- (지정주체) 보건복지부, 심평원에 업무 위탁
- (신청방법) 집중신청기간(1차, 2차)에는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의협을 통해 심평원에 신청
 - 신청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심평원이 구축한 시스템에 개별 의료기관이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
 - *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의료기관도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입력 필요
 - 다만,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려 두 차례에 나눠 시스템 오픈 예정
 - 1차 시스템 오픈(2.8.) 시 의료기관 기본정보*만 입력하고,
2차 시스템 오픈(2.28) 시 세부 운영현황 입력 (의료기관 찾기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정보 입력)
 - * 요양기관명, 요양기관기호, 요양기관종별, 주소, 관할 보건소, 운영가능일자

2. 홍보방안

- (의료기관) 「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」임을 알리는 포스터 게재
 - * 심평원에서 포스터 시안을 제작하여 의협에 송부 → 의협은 각 지역의사회에 시안 파일을 송부하고,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인쇄
- (대국민홍보) 추후 재안내 예정

